

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
(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)

관리번호	-
------	---

[] 기한 내 신고 [] 수정신고 [] 기한 후 신고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수증자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	③ 거주구분	[] 거주자 [] 비거주자
	④ 주소				⑤ 전자우편주소	
	⑥ 전화번호 (자택)	(휴대전화)			⑦ 증여자와의 관계	증여자의 ()
증여자	⑧ 성명		⑨ 주민등록번호		⑩ 증여일자	
	⑪ 주소				⑫ 전화번호 (자택)	(휴대전화)
세무대리인	⑬ 성명		⑭ 사업자등록번호		⑮ 관리번호	
	⑯ 전화번호 (사무실)	(휴대전화)				

구분		금액	구분		금액
⑰ 증여재산가액			④①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		
⑱ 비과세재산가액			세액공제	④② 세액공제 합계 (④② + ④③ + ④④ + ④⑤)	
과세가액 불산입	⑲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)	④③ 기납부세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8조)			
	⑳ 공익신탁 재산가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2조)	④④ 외국납부세액공제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9조)			
	㉑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2조의2)	④⑤ 신고세액공제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9조)			
㉒ 채무액				④⑥ 그 밖의 공제·감면세액	
㉓ 증여재산가산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제2항)			④⑦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 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)		
㉔ 증여세과세가액 (⑰ - ⑱ - ⑲ - ⑳ - ㉑ - ㉒ + ㉓)			④⑧ 신고불성실가산세		
증여재산공제	②⑤ 배우자		④⑨ 납부지연가산세		
	②⑥ 직계존속		④⑩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8조)		
	②⑦ 직계비속		⑤① 자진납부할 세액(합계액) (③⑧ + ③⑨ - ④① - ④② - ④③ + ④④ + ④⑤ + ④⑥)		
	②⑧ 그 밖의 친족				
	②⑨ 혼인		납부방법	납부 및 신청일	
	③① 출산				
③② 재해손실공제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4조)			⑤② 연부연납		
③③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5조)			현금	⑤③ 분납	
③④ 감정평가수수료				⑤④ 신고납부	
③⑤ 과세표준 (②④ - ②⑤ - ②⑥ - ②⑦ - ②⑧ - ②⑨ - ③① - ③② - ③③)			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 세무서장 귀하		
③⑥ 세율					
③⑦ 산출세액					
③⑧ 세대생략가산액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7조)					
③⑨ 산출세액 계(③⑥ + ③⑦)					
③⑩ 이자상당액					

신고인 제출서류	1.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등본 2.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	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,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- "② 주민등록번호" 및 "⑨ 주민등록번호"란: 외국인인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)를 적습니다.
- "③ 거주구분"란: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☒ 표시합니다.
* "거주자" 및 "비거주자"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⑦ 증여자와의 관계"란: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. [예시: 부모(증여자)가 자녀(수증자)에게 증여하는 경우: 자]
- "⑬ 성명"부터 "⑯ 전화번호"란까지: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.
- "⑰ 증여재산가액"란: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)의 "⑨ 증여재산가액"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[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) "⑫ 계"의 금액]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"⑰ 증여재산가액"
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[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) "⑧ 합계액"]이 최대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: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"⑬ 증여재산가액"
- "⑳ 채무액"란: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[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) "⑫ 계"의 금액]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: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)의 "㉑ 채무액"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"㉕ 배우자"란부터 "㉗ 그 밖의 친족"란까지: 증여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.

* 예시: 부모(증여자)가 자녀(수증자)에게 증여하는 경우 "㉕ 직계존속"란에 증여재산공제 작성

가. 배우자: 10년간 6억원	(2008.1.1. 이후 증여분부터)
나. 직계존속: 10년간 5천만원 /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	(2014.1.1. 이후 증여분부터)
다. 직계비속: 10년간 5천만원	(2014.1.1. 이후 증여분부터)
라. 그 밖의 친족: 10년간 1천만원	(2016.1.1. 이후 증여분부터)

* (2025. 3. 14. 전 증여분까지) 배우자,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(2025. 3. 14. 이후 증여분부터) 배우자,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의 혈족, 3촌 이내의 인척

- "㉙ 혼인"란: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세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)의 "㉙"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"㉚ 출산"란: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세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)의 "㉚"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"㉛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"란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 3천만원을 적습니다.
- "㉜ 세율", "㉝ 산출세액"란: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
* 산출세액 = (과세표준 × 세율) - 누진공제액

<증여세 세율표>

증여재산 구분	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가. 창업자금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)	45억원* 이하	10%	-
나. 가업승계 주식 등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)	120억원 이하	10%	-
	120억원 초과 290억원** 이하	20%	120,000만원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	1억원 이하	10%	-
	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20%	1,000만원
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30%	6,000만원
	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40%	16,000만원
	30억원 초과	50%	46,000만원

*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: 95억원

**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: 390억원, 30년 이상인 경우: 590억원

- "㉞ 이자상당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"㉟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의11서식)의 "바.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세액"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"㊱ 신고불성실가산세"란부터 "㊳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"란까지: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,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.
- "㊴ 연부연납"란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. 이 경우 상속세(증여세)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(별지 제11호서식)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"㊵ 분납"란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(예정)일자를 적습니다.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가.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나.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
- "㊶ 신고납부"란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.